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허창원 의원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0년 11월 20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3일

3. 제안사유

-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 및 공동체 성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나.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다.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한 도 차원의 시책 수립·시행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마. 기부식품등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바.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 교육,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제9조)

##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희)

### 가. 제출배경

-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으로 알려진 기부식품제공사업은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개정: 2016. 2. 3. / 시행: 2017. 2. 4.)에 따라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 적용하고, 전국 및 광역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 지역사회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 현재 충북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2018년 12월27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도 내 11개 시·군에는 26개의 푸드뱅크와 5개소의 푸드마켓이 운영 중임.
  - 시군푸드뱅크(26개소): 청주8, 충주2, 제천2, 보은1, 옥천2, 영동1, 증평1, 진천2, 괴산2, 음성3, 단양2
  - 시군푸드마켓(5개소): 청주1, 충주1, 제천1, 괴산1, 단양1

#### <충청북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원현황>

구 분	' 20년 예산	주요내용
계	96,741천원	
1. 인건비	81,564천원	· 2명(인건비, 수당, 사회보험 등) ·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자체규정 적용
2. 운영비	6,677천원	·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등
3. 사업비	8,500천원	
- 홍보비	4,000천원	· 분기별 홍보소식지 발송 · 기부업체 홍보물품 발송
- 종사사교육비	1,500천원	· 도, 시군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 종사자워크숍	3,000천원	· 충청권역 합동워크숍

- 2019년도 기준 충북의 기부물품 접수실적을 살펴보면, 10,202백만원으로 전국 5위, 광역도 중 3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단위:백만원)

시도명	접수실적	시도명	접수실적
서울특별시	47,426	경기도	50,352
부산광역시	8,075	강원도	3,426
대구광역시	4,693	충청북도	10,202
인천광역시	13,784	충청남도	11,475
광주광역시	5,182	전라북도	7,981
대전광역시	5,099	전라남도	3,917
울산광역시	2,572	경상북도	5,711
세종특별자치시	968	경상남도	4,729
		제주특별자치도	2,606

- 기부식품등제공사업은 민간자원을 활용해 사각지대 결식계층의 건강 및 기본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도 차원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
- 본 조례안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기부식품등에 의한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의 안전한 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을 방문해 검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감독과 이에 따른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식품등의 기부 관련 기여자에 대한 포상 내용을 규정함.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식품등 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사항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절차상으로 지역 푸드뱅크 관계자 및 해당 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조례안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바 문제가 없음.